

Vol. 07

2024.07.15.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11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김나래전임 nrkim@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예고

III.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 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동물성 식품 범위 신설 (제2조)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가. 동물의 식육·원유 또는 알 나. 가목의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다.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수입위생평가 도입 (제11조)	축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통한 수입신고 수리 (제20조의2)	수입신고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제39조의2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해외 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실시근거 마련 (제25조의4)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시행일

’24.06.14.

I. 법령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동물성 식품의 범위 신설 (제1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정의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6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3) 시행일

’24.06.14.

I. 법령 개정사항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사항 확인 또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검사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을 추가하고, 축산물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및 정밀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제44조의6)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몰 등에 게재된 정보 확인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추가 (별표9 제2호)	수입식품 등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등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

(3) 시행일

24.06.14.

I. 법령 개정사항

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대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별표24)	다음의 상황허가 면제사유 추가 제26조 개별수출허가 면제사유 중 7.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7.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3) 시행일

'24.06.21

I. 법령 개정사항

5.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자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매기준율 산출 시간 기준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9:00~15:30)으로 산출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10-21조의2)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안 제2-6조, 제7-37조, 제7-48조)	외국인투자자가 본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하여 국내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반영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

구분	내용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허용 (안 제4-4조)	신용카드사를 통한 소액송금(연간 미화 5만불)을 허용한 규제 샌드박스 만료('24.9월) 이후에도 거래신용카드사 지정을 통해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안 7-14조, 제7-22조)	외화자금 차입액과 증권발행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3) 시행일

'24.06.28.

I. 법령 개정사항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어업·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페로프 등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리·해체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제조하는 유형의 재활용은 재활용 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및 의약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등의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시설을 제외한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열분해실 및 고온용융실에 압력측정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해당 소형 소각시설의 연소실 출구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기준을상향하여 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에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하는 자” 추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추가
의약품 등의 폐포장재 수집·운반하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 하도록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3) 시행일

24.06.28

I. 법령 개정사항

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의 제공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제19조제4항제5호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제11호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 ① 비대상 → 대상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 레이저 용접기 및 커팅기 - 두피 LED 헬멧 - UV 손톱경화기 - 터프팅건 - 자동 캔시머 - 레이저각인기 - 레이저마킹코팅기 - LiDAR 램프 ② 비대상 → 대상 (자기시험적합등록) - 열풍수축기 - 투영기(직류전원) -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③ 대상 → 비대상 - 전기방향탈취기 - 파워뱅크(직류입출력) ④ 적합성평가 유형 변경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 자기시험적합등록 - 보풀제거기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 지정시험기관적합등록 - 전격살충기

(3) 시행일

24.06.30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1) 입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복합진동 초음파 용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기류 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세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 46개 품목 ● 입안으로 추가되는 물품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복합진동 초음파용접기 등 신규 품목 12개를 추가 ● 입안으로 제외되는 물품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기류 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 23개 품목을 제외 <p>총 3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p>

(3) 의견수렴기간

24.07.19

II. 입안예고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이유

통관목록 작성 요령 신설로 특송업체 등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확한 수출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

우편물목록의 정의와 서식을 신설하고, 우편물목록의 제출을 명시화하여 수출 우편물 통관절차 개선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수출업계의 건의를 반영, 다수 수출자의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을 1인 구매자에게 간이수출 시 합배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통관목록 제도 개선 (별지 제6호, 별표14)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 개정 및 작성요령 신설 목록통관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을 용이하게 개선 (국세청과 전산 연계 등)하고, 통관목록 품목정보로 수출 트렌드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기반 마련
우편물목록 제도 개선 (제2조제6의2호, 제42조, 제37조의3제1항,2항, 별지 제6의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규정 정비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을 가능하게 규정한 고시 조문은 상위법(관세법 제257조*)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삭제 • 절차 마련 우편물목록 정의·서식 신설 및 제출 세관·방법을 명시하는 등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목록 제출 절차 마련 • 수출실적 인정 통관목록과 같이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

구분	내용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제3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 상향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전자상거래 간이수출(목록변환)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관리 개선 (제5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포장 근거 신설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수출고시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대상)
조문 정비 (제2조제5호, 제7조제2항제2호, 제7조의3, 제36조제1항제8호, 제44조제2항)	현행 제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불명확·부적합 조문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록통관 정의 등 무역통계 미반영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목록통관도 환급 및 정정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 정비 ● 목록통관 정정/취하/각하 통관목록에 의한 수출 시 정정·취하·각하 행정위의 절차적 근거 마련

(3) 의견수렴기간

24.06.24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무역위,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및 평판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5 월 30 일(목) 제 448 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1 차 재심,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에 대한 2 차 재심도 개시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피해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국제규범에 따라 신청 사건에 대해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개시 내용	
조사대상물품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Cold Rolled Stainless Steel)
정의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으로서 모든 강종, 형태, 모든 폭, 길이 및 두께의 제품을 포함하고, 표면처리 및 트리밍 여부를 불문함
용도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기계부품 등
관세분류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조사대상기간	(산업피해) 21.1.1. ~ 23.12.31 (덤핑조사) 23.1.1. ~ 23.12.31.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2024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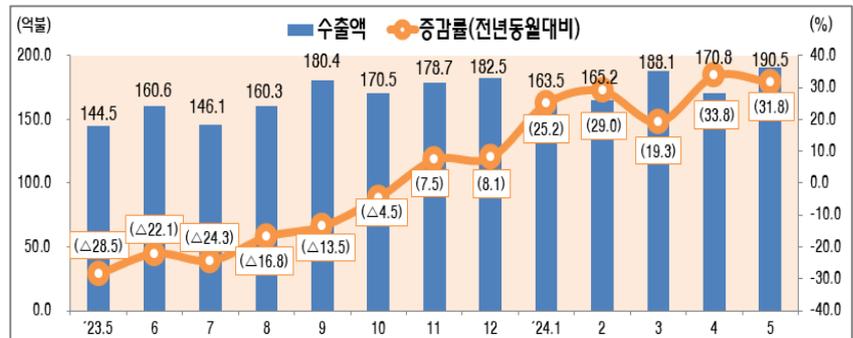
24년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90.5 억불, 수입은 114.8 억불, 무역수지는 75.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

5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전반의 수출 호조로 지난달(33.8% ↑)에 이어 2개월 연속 30%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ICT 수출 증감률(%)

('24.2월) 29.0 ↑ → (3월) 19.3 ↑ → (4월) 33.8 ↑ → (5월) 31.8 ↑

< 최근 월별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추이(억불, %, 전년동월 대비) >



품목별로 반도체(52.4% ↑), 디스플레이(15.3% ↑), 휴대폰(10.8% ↑), 컴퓨터·주변기기(42.5% ↑) 등 주요 품목 전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35.3% ↑), 베트남(30.6% ↑), 미국(20.7% ↑), 유럽연합(21.3% ↑) 등 주요 지역 수출도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입*(114.8 억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의 증가로 전년 동월(112.1억불) 대비 2.4% 증가하였다.

* 주요 수입 지역 :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등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월 18일(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무역 확대에 의해 더욱 다양한 농산물들이 국제적으로 거래됨에 따라 공정한 관세부과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분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협약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농산물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새로운 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1분기 중앙관세분석소와 국립농업과학원은 '듀럼밀·듀럼계통 교배종*(기본세율 3%)'과 '그 외 밀(기본세율 1.8%)'을 판별할 수 있는 유전 분석 기술 교류를 통해 수입 농산물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양 기관은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해 이번 협약을 기획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수출입 식물체 종(種) 구분 기술 개발 및 활용, 식물체 분석 관련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 협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관세분석소 양진철 소장은 "이번 협약은 새로운 무역 패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립농업과학원과의 협력으로 수출입 농산물에 대한 분석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분석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관세청은 6 월 18 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

<p>▪ [정비대상] 213 개 행정규칙(고시 97, 훈령 116) 및 1,333 개 내부 지시·지침</p> <p>▪ [내용] 관련성 높은 67 개 고시·훈령을 28 개로 통폐합하여 39 개는 폐지 (고시 : 97 개 → 82 개, 훈령 : 116 개 → 92 개) 지시·지침은 832 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 1,333 개 → 501 개)</p> <p>▪ [일정] 올해 10 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p>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3 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 개의 행정규칙을 28 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 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 4개 통·폐합 유형별 예시 및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

통·폐합 유형	건수	통폐합 대상 규칙
①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예시) 선박용품 관리 고시 + 항공기용품 관리 고시	11	30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대상 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 (예시) 납세자권리현장 제정 고시 + 관세청 납세자보호 훈령	6	12
③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3	7
④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예시) 관세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 관세공무원 고충처리 훈령	8	18
합 계	28건	67개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 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 개는 폐지하고, 12 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Ⅲ.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 체결

관세청, 영국 관세당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영국 진출 우리 기 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26일(10:30~12:00, 현지시각) 영국 런던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지난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관세기구(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